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5조 [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 업무 등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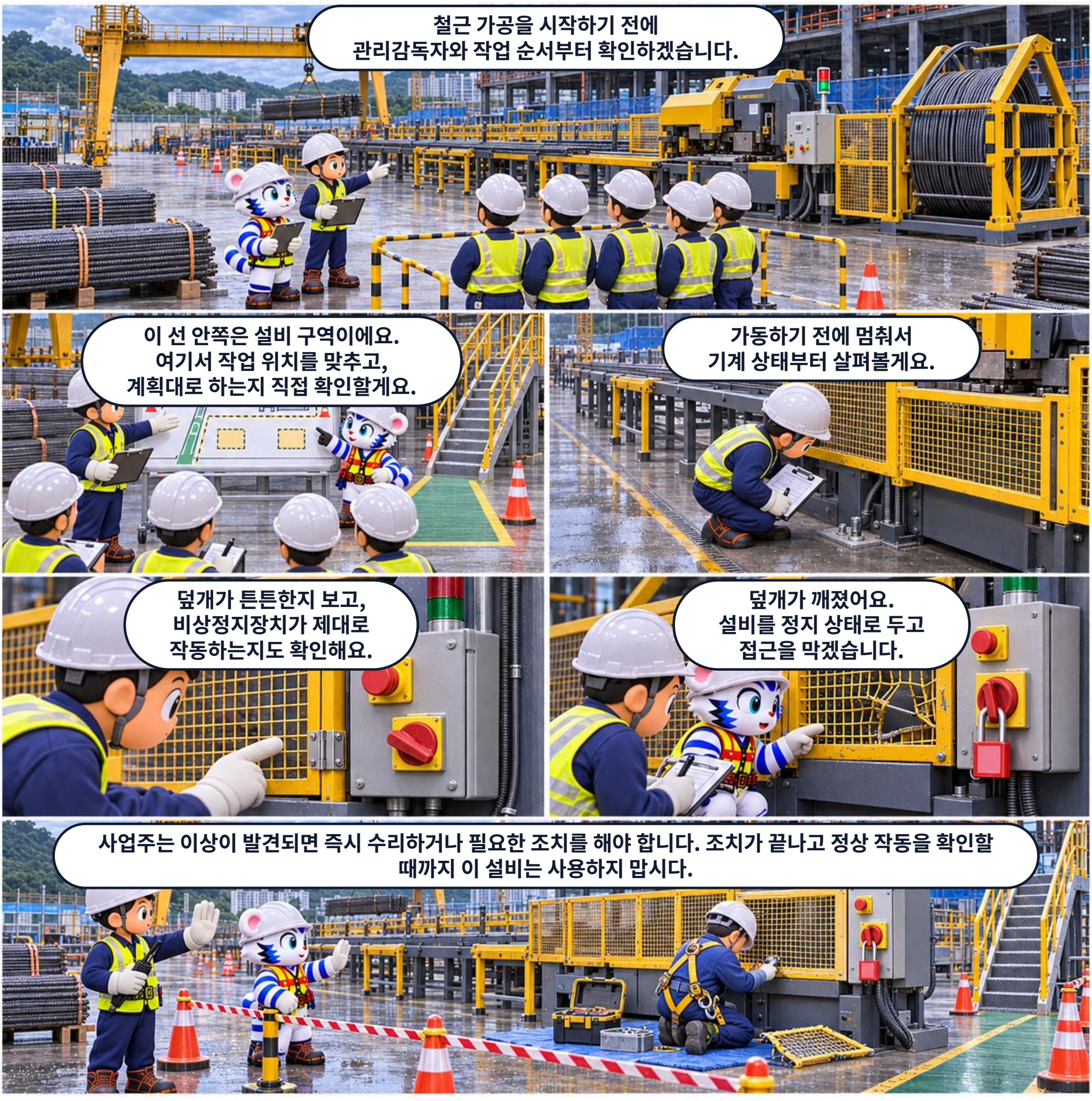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 업무 등) · 조문 원문 전체

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(건설업의 경우 직장 · 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 ·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, 이하 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로 하여금 **별표 2**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 ·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26.>

② 사업주는 **별표 3**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**작업을 시작하기 전에**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**즉시 수리**하거나 그 밖에 **필요한 조치**를 하여야 한다.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29.